

## 法學教育和 活動의 回顧

對 談：裒載湜(서울大學校 法科大學教授)

白忠鉉(서울大學校 法科大學教授)

日 時：1989年 8月 18日, 午前 10:30.

場 所：社稷洞 國際法研究室

白忠鉉 教授：선생님의 回甲을 진심으로 祝賀드립니다. 선생님께서 植民地支配下에서 教育을 받으셨고, 解放과 6.25를 거치는 民主教育의 導入期를 몸소 체험하셨으며, 우리나라 法學教育和 研究의 胎動期라고 할 수 있는 1958년부터는 社會生活의 全生涯를 母校인 우리 法科大學에서 봉직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回甲記念對談은 선생님 개인의 회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法學教育이 걸어온 발자취를 올바르게 정리해 둔다는 각별한 의미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國際法分野에 쌓아올리신 學問的 業績과 貢獻에 관하여는 따로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우리 大學에서의 法學教育和 學問活動에 관련된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선생님께서 法學에 입문하시게 된 배경 그리고 특히 國際法을 전공하기로 결정하시게 된 동기부터 말씀을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 法學入門의 動機와 學窓生活

裒載湜 教授：제가 올해 回甲을 맞는다고 생각하니 참으로 세월은 流水와 같다는 표현도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하는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새삼 이런 對談을 제게 하게 되고 보니 感懷가 정말 깊습니다.

제가 法學을 공부하게 된 동기를 말하자면 어린 시절의 이야기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만, 사실 저는 요즈음의 高等學校에 해당하는 6年制 中學 당시에는 醫學을 공부할 생각으로 理科에서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解放以後의 혼란 속에서 자라면서 그리고 우리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국가를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로 있었겠지만 나라를 잃었던 백성이 36년만에 光復을 맞아 제나라를 되찾은 감격 속에서 「國家」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게 되면서 社會科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法學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재학 중에는 지금의 刑事法學會에 해당하는 Iris반의 회원으로서 주로 刑事法研究에 전념하였습니다. 당시 거의가 일 본책이었던 저명한 刑事法 책 50여권을 독파하면서, 토요일마다 Iris회에서 刑法學上 主觀主義의 입장에서 서서 열렬한 토론을 하였습니다. 특히 大刑法學者이자, 당시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지도해 주셨던 劉基天 선생님의 영향은 저의 大學院進學에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大學院에 진학하기로 마음 먹은 것은 비교적 일찍 대략 3學年 말경이었는데 그때까지는 刑法을 專攻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원진학에 입학하여 다시 한번 專攻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대학원에는 刑事法專攻, 民事法專攻, 公法專攻, 法思想史專攻의 네 전공이 있었는데 刑事法專攻과 公法專攻 사이에서 고민을 한 것입니다. 그때 앞서 이야기한 법학 선택의 동기였던 국가에 대한 관심이 다시 솟아났습니다. 당시에 많은 수는 아니었지만 實務者들과 法學者들은 거의가 民·刑事法을 전문으로 하고 있었고 그래서 결국 國家學의 범주에 드는 공법계통을 전공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전공을 바꾼다는 것은 나름대로는 중요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없는 백성에게는 憲法이 있을 수 없고 國際法이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깊이 빠져 있던 저는 당시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憲法學과 國際法學 즉 公法學을 개척자적인 야망을 가지고서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대학원에 들어가는서는 주로 憲法, 國際法, 法哲學講義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학점을 신청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미련이 남아서 刑事法講義도 들었습니다. 대학원과정에서는 지금은 고인이 되신 朴觀淑선생님 그리고 李漢基 선생님의 학문적인 영향과 인격적인 영향이 깊었습니다. 또 憲法分野에서는 韓泰淵선생님의 영향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재학 중에, 지금도 읽어보면 명저라고 생각되는 K.C. Wheare의 *Modern Constitutions*를 『現代憲法論』이라는 제목으로 번역하기도 하였습니다.

대학원을 마치고 대학에서 처음으로 講義를 한 것은 國際法이 아니고 比較憲法論이었습니다. 1955년의 일로 생각되는데 밤을 새워 열심히 강의준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1956년에는 제일 젊은 강사로서 서울大學校에서 原書講讀을 맡았습니다. 당시의 교재는 P.C. Jessup의 *Modern Law of Nations*였는데 그 책은 저의 國際法研究의 방향을 교시해 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57년부터는 法科大學에서 國際法講師로서 강의

를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時間講師였지만 모교에서 國際法을 강의하게 된 것이 제가 公法 중에서도 특히 國際法으로 방향을 굳힌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1958년에는 法大卒業生으로는 처음으로 저와 현재 동료로 있는 郭潤直교수가 법과대학에 專任으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國際法을 지금까지 연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다만 요즘도 학생들에게 언제나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公法을 하는 사람들은 國際法과 憲法을 밀접하게 관련지워서 연구해야 한다는 생각은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 II. 變革期의 法學教育制度

**白教授:** 선생님의 말씀 속에서 法科大學에서의 연구와 교육의 변천과정도 설명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나라의 法學教育은 그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과거 日帝時代의 제도를 상당한 기간동안 답습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大學校 法科大學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教科課程, 教育方法, 研究方法을 추구하는 개선이 지속되어 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작년 法科大學 學長任期를 마치실 때까지 法學研究所長 등 法學教育和 研究에 관련된 모든 학교 行政補職을 두루 거치셨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전반적인 教育制度의 개선을 위한 각종 委員會 활동에도 빠짐없이 관여를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것이 자연히 우리나라의 法學教育의 변천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된다는 생각에서, 지금부터 法學教育에 촛점을 맞추어 말씀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教授活動의 초기에 이미 Harvard Law School에서의 연구경험도 쌓으셨고, 특히 國際法教授이시면서 후에 國際司法裁判所判事까지 역임하신 Baxter

教授와는 각별한 교류를 계속해 오시면서, 法學教育制度和 教育方法論 특히 國際法研究에 대해 많은 영향도 받으셨고 또 그 경험을 法科大學에서의 교육에 실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法學教育制度의 초창기부터 변천과정의 중요한 문제를 하나씩 짚어가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襄教授** : 제가 법학교육의 제도, 방법, 내용에 관해서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깊이하게 된 것은 역시 Harvard에 다녀온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언젠가 Fides에 國際法研究를 중심으로 해서 法學方法論과 法學教育方法論의 개선에 대해서 기고한 적도 있습니다만, 당시부터 法學教育方法論과 法學方法論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4.19 전후의 어려운 시기에 學生課長을 맡아 어려운 과정을 겪었고 Harvard에서 돌아오자마자 敎務課長을 맡아 敎務行政을 맡게 되어 法學教育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白教授** : 그러면 法學教育과 관련된 두가지 구체적인 문제 즉 敎科課程의 내용의 변천 발달과 公私法學科로 나뉘어져 있는 현재의 우리제도의 문제로 좁혀 앞으로 우리사회에 필요한 것은 어떠한 방향인가에 대해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襄教授** : 교과개편과 관련해서 말하자면 그동안 새로운 과목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 가운데 國際去來法은, 1966년으로 기억되는데 제가 Harvard 대학에서의 Laws of International Transactions라는 세미나에 참석하였던 경험을 토대로 비슷한 과목을 商科大學에서 강의하기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1967년에 李漢基 선생님이 學長이 되시면서 다시 敎務行政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法學教育에 대한 평소의 생각을 실천해 보고

자 法科大學 내에 法學教育研究委員會를 두고, 隔週로 모여 2년여간 토의를 거듭한 끝에 4년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서 두가지 案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豫科 2年, 本科 4年의 6年制案이었습니다. 이 案은 당시 朝鮮日報에 대서특필되어 다른 법과대학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豫科 2年, 本科 3年의 5年制案이었습니다. 5年制案의 주된 논거는 당시의 경제사정에 비추어 6년제안은 우리가 아닌가라는 것이었습니다. 豫科 2年을 두기로 한 것은 두 案에 공통된 것이었는데, 그 이유는 法學을 이수하는데 있어서는 人文, 社會科學教育이 보다 철저해져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哲學, 技術, 科學의 3박자를 갖추어야 하는 法學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었습니다. 이 案은 敎授會議에서도 여러차례 논의되어 긍정적으로 결의된 바도 있습니다. 특히 5年制案은 저의 학장 재임중에 서울大學校의 學制로 확정이 되어서 그 실행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원래 行政學科는 실질적으로 公法學科로서 그 졸업생에게는 法學士學位를 주게 되어 있었는데 Harvard에서 돌아와 보니 行政學士學位를 주도록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중요한 문제의 결정과정은 상당히 불투명했습니다. 저는 行政學科의 교과내용이 사실상 法學중심이라는 점을 증시하여 다시 원래의 제도로 복원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5.16이후 갑작스럽게 行政學이라는 것이 일반화되면서 法科大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行政學科를 확대하자는 주장이 나오면서 교과과정과도 관련된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한 주장이 오늘날 行政學科를 신설하고자 하는 움직임과도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60년대말부터 서울대학교 발전을 위한 委員會가 있었고, 1971년부터는 서울대학교 10개년계획을 정식으로 다루는 企劃委員會가 발족되어 저는 그 위원으로 10여년

간 활동했습니다. 그 企劃委員會의 기본방향은 大學院중심의 대학, 유사학과의 통합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로서는 行政學科는 더 이상 公法學科와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비록 企劃委員會의 단계에서까지는 2個學科를 두자는 法科大學의 결의가 통과되었지만, 學長會議에서 최종적으로 법학과 하나만을 두기로 결정이 나서, 관악 移轉이후인 1980년까지 단일학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行試合格者의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 데 대한 동창회의 우려와 교수들의 요구에 따라 다시 두개 학과를 두기로 의견을 모았는데 또다시 과의 명칭이 문제가 되었고 企業法學科를 신설해서 1개 학과로 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교수회의 투표로 公私法學科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公私法學科制度로 정착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문교부로부터 公私法學科로 나눈 전제가 없다는 점과 나누는 경우에도 교과 내용을 어떻게 가를 것인가 라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결국 아직도 公法學科의 독자성 규명이라는 문제가 남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생각컨대 '公法學科는 고급행정관료의 양성이라는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단계의 우리나라 法科大學教育의 目的은 實務와의 관계에서 말하자면 반정도는 法曹系로 1/3 정도는 行政系로, 나머지는 企業기타 分野로 진출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公法學科의 교과과정은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 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특히 그러한 교육은 우리나라에 있어야 할 法治行政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 Ⅲ. 國際化時代의 大學과 學術活動

白教授 : 같은 내용의 다른 측면이 되겠습니다만, 대학에서의 연구활동이라는 측면에

서 여쭙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法科大學에서의 학문활동의 질적향상을 위해서도 항상 노력하셨다고 생각합니다. 法學研究所長으로 계실 때에도 여러가지 형태의 국내외 학술행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학자들과 함께 法學研究方法論을 위시해서 특수문제에 관한 많은 국제학술행동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수 중심의 활동이외에 學者養成이라는 측면에서는 아직 미흡한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서울대학교 전체의 문제입니다만 대학원중심대학이라는 명분에 부합하는 실질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靑教授 : 요즘 學者 아닌 교수가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교수의 기본은 역시 學問을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이 점에서 연구기능의 강화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60년대 말에 研究機能強化를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基金확충과 講義負擔의 축소 그리고 研究教授制度의 도입 등을 주장하여 왔습니다.

大學의 研究機能強化의 문제는 大學院教育強化와 직결되는 과제이며, 따라서 이것은 우리(나라)大學의 當面課題로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 없는 最優先의 목표이어야 합니다. 말할 것도 없이 大學院의 本質은 學者의 양성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大學은 學問의 殿堂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大學院中心」이라는 용어 또는 개념은——서울대 特有의 의미를 지닌 것이기는 해도——일반적으로 말해서 적당한 것이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大學院教育의 「強化」는 緊要한 당면과제임을 강조합니다.

法學研究所를 4년간 맡아 오면서도 재정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法學誌를 季刊으로 발간하기로 한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故 兪鎮午선생께서 유럽의 法學系를 둘러보신 후에

계간으로 낼 것을 충고하신 것이 자극이 되기도 했습니다. 法學誌를 일년에 4권 내는 의의는 4권이 라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교수들이 글을 실을 수 있는 기회를 보다 자주 갖는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저는 法大 助教나 法學研究所助教들에게 學者가 될 사람으로서 잡일보다는 먼저 공부할 것을 권하면서 일년에 한편씩의 논문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指導教授의 감수를 받아 발표할 수 있도록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년에 두권 나오는 法學誌에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웠고 그래서 네권을 내기로 한 것입니다. 결국 法學誌를季刊으로 발간하기로 한 것은 教授와 助教들에게 학문적인 자극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학자들도 초빙한 가운데 그런대로 규모가 큰 國際學術大會를 매년 개최한 것도 기억에 남는 일입니다. 그 학술대회에서 다루었던 주제로는 法學方法論, 法學과 法律實務, 環境法, 法學教育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겪었던 재정적인 어려움은 실로 큰 것이었습니다.

**白教授 :** 선생님께서도 또한 學長職을 맡고 계시는 동안 국제간의 학자교류에도 역점을 두시고 法科大學教授와 東京大學 法學部教授 간의 교류를 추진하셔서 상호방문을 통한 학술교류가 정착되는 단계에 이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法學教育을 비롯한 상호 공동관심사에 대한 소개 정도에 그친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의 바람직한 방향은 어떠한가 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襄教授 :** 오늘날 우리가 모든 분야에서 국제화시대를 맞고 있는 가운데 경쟁을 해나가지 않으면 안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法學分野가 비교적 國際化에 뒤늦은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國際交流는 教授와 留學生 모두 주로 美國과

유럽 중심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훨씬 먼저 西歐의 문물을 받아들여 이제는 나뉠대로의 체계를 세웠다고 자부하는 日本法學界와의 교류를 통해 그들이 서구의 학문을 통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는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東京大學과의 교류를 추진하여, 첫째에는 法學教育에 대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지난 여름에 東京大學에 우리 교수님들이 가서 서로의 法學教育의 문제점을 드러내 놓고 이야기를 나누었고 日本의 司法研修所와 大法院도 직접 방문하여 法院과 判事들과도 토론을 나누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매우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그 방문이 앞으로 우리의 法學教育制度를 논의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의 法科大學 5年制案이 그들에게 큰 자극이 되었던 것으로 봅니다. 일본도 5年制를 실시하려고 하다가 좌절된 경험이 있어서 많은 질문이 나왔습니다. 東京大와의 교류를 추진하면서 제가 생각해 온 계획은 다음으로 法學方法論에 대해,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전문분야끼리 모임을 가지는 식으로 매년 번갈아 교류하여 더욱 깊이와 폭을 넓히는 것입니다.

#### IV. 教授・學生關係와 大學生活

**白教授 :** 法學教育和 학생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法科大學의 역사를 돌아본다는 의미에서 두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첫째는 法科大學의 학생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학창생활 중의 하나가 학생들 스스로가 주체가 되는 學會活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社會變革期를 거치면서 학회활동자체도 많이 변질되어 왔습니다. 둘째로는 教授와 學生간의 관계를 보다 밀접하게 하고 대학생활을 보다 알차게 하기 위한 제도로서 출발하였던 지도교수제도 역시 사회의 혼란기

를 거치면서 크게 변질되었습니다. 이들 두 가지 즉 學會活動과 指導教授制度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靑教授** : 대학생에서의 學會活動은 학생들 자신을 보다 성장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학문적 취미를 키울 수 있는 기회인 동시에 학생들간의 그리고 교수와의 인간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학생들에게 학문적인 個性을 키워주는 계기도 되는 것입니다. 저는 30여년의 경험을 통해 학회활동은 적극 장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학생들에게도 재학중에 적어도 한개 이상의 학회에서 활동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대학과 교수들의 입장에서 학회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도와 도움을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指導教授제에 대해서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학생들과 교수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法科大學의 경우 지도교수제가 생긴 것은 어느대학 보다 앞서서 대학 자체의 필요에서였습니다. 4.19 전 제가 學生課長을 할 때 당시 학생수가 1,250여명이어서 장학금지급에 있어서 가정사정이 어려운 학생을 가려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당시 13명 정도였던 교수별로 학생들을 분담해서 교수들이 상담을 통해 장학추천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법과대학의 지도교수제의 始發이었는데 이는 文敎部에서 지도교수제를 두라고 하기 이전의 일이었습니다. 매달 어느 교수는 학생들과 다과회를, 어느 교수는 야유회를 그리고 저의 경우에는 영화감상등을 통해 교수와 학생들이 보다 가까와 질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獎學生選定이라는 현실적인 必要에서 출발한 제도가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 문교부에서 의무적인 지도교수제를 강요하면서 교수와 학생의 일반적인 인식이 나빠지게 되었

던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이렇게 잘못된 인식을 불식하고 法大 指導教授制 출발 당시의 動機와 目的으로 돌아가 명칭을 바꾸어서라도 제도 자체는 개선해서 유지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5共時代 그 이러한 상황에서 보직교수로서 때로는 야단도 치고 화를 내기도 했지만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결과적으로 잃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당장에 어떤 것을 얻은 것은 없다 하더라도 길게 보면 노력한 만큼의 효과는 있었다고 믿습니다. 학생들이 血緣關係를 떠나서 가장 가까운 사람은 교수이고, 교수이어야 합니다. 교수는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능력의 한계때문에 그 이상 도와줄 수 없는 경우는 있다 할지라도, 자기 제자에게 해가 되는 일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것만은 아직 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왜 교수들이 우리와 實에 對政府鬭爭에 나서지 않았는가라고 비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수들이 가지는 한계를 학생들은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교수는 스승입니다. 스승은 자기 제자에게 害를 끼치지는 않는다는 믿음의 倫理가 오늘날과 같은 어려운 때에 더욱 짝터야 합니다. 바람직한 지도교수제가 상실되어 버린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 V. 法學教育과 社會進出

**白教授** : 지금까지 선생님께서 法學教育의 目的, 內容, 變遷過程 그리고 특히 우리 서울大學校 法科大學이 경험했던 모든 사례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리하는 의미에서 먼저 일반적인 문제로서 법학교육과 우리 사회의 관계에 대해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法治主義가 잘 실현되는 사회로서의 민주사회에 부합하는 시험제도란 어떠한 것이어야 할 것인

가와 관련한 기본적인 기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靑教授** : 사회와의 관계에서 볼 때, 법조인이 되는 실질적인 자격은 대학에서의 교육에 의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법과대학이 법조인의 발이 되어야 합니다. 이 점에서 試驗制度和 法學教育은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대학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社會職域으로 진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法學教育도 정상화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 지금과 같이 司法試驗에 있어서 대학에서의 교육이 거의 무시되는 상황에서는 法科大學은 학원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司法試驗 選拔人員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과거에 비해 대폭 늘어나 현재는 300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도 늘어나는 인구나 사회적 수요를 생각할 때는 부족한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오래 전부터 500명을 뽑고 있고 그 숫자를 늘이는 방향으로 개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800명으로 確定).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는 300명도 많다고 해서 200명으로 줄이자는 案이 大韓辯協, 法院行政處, 法務部 3者合意로 제출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당시 法大學長으로서 法學教育의 향상을 위해 모든 法科大學, 法學科가 참여하는 모임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에서 '84년에 韓國法科大學協議會를 구성해서 그 회장 이름으로 300명은 최소한의 필요인원이라는 건의서를 제출해서 관철시킨 적이 있습니다. 선발인원을 줄이는 것은 법학교육의 정상화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司法試驗制度이건 行政考試制度이건 대학에서의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體系的인 교육을 받은 사람을 뽑는다는 기본적인 기준 아래 운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더라도 독학자를 배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독학자를 위해서는 현재의 1次試驗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원칙으로는 위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야 할 것이며, 그럼으로써 法科大學이 考試學院이 되고 있는 타락상은 막아야 할 것입니다. 이 점은 法學教育을 맡은 사람들 모두가 깊이 생각해 할 것이며, 보다 적극적인 자세에서 法學界와 實務界의 벽을 헐면서 試驗制度의 改善方向을 제시하는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VI. 所重한 職分 : 國際法研究

**白教授** : 지금까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 法學教育이 직면했던 모든 핵심적인 문제를 망라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보다 많은 말씀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지면의 제약도 있고 해서 이제 선생님의 개인적인 활동을 조금 여쭙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사회활동의 면에서는 거의 全生涯를 서울大學校 法科大學의 교육을 위해 바쳐 오셨습니다. 또 선생님께서는 우리 사회가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는 變革期를 살아 오셨습니다. 그래서 4.19때도 교수로서 참여하셨고, 學界와 實務界를 연계시키는 활동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셨습니다. 제 기억으로 말씀드리자면 韓日會談에 있어서의 法律顧問 또는 諮問委員으로서, 그리고 海洋法會議에 있어서의 法律顧問으로서, 기타 國際法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한 法務部와 外務部 등의 諮問, 顧問교수로서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순수한 학술활동으로는 大韓國際法學會會長 등 많은 학술활동도 적극적으로 주도 하셨습니다. 특히 國際人權法과 관련하여 선도적으로 학계에 많은 문제를 제기하셨고 재일동포, 사할린동포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 實務界에 그리고 일본의 學界와 實務界에 국제법적 접근의 계기를 마련하신 공헌이 계

됩니다. 그래서 國際人權法에 대한 말씀과, 장래의 학문적인 그리고 법학교육과 관련한 개인적인 소망 내지는 계획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靑教授** : 돌이켜 보면 별로 공헌을 했다거나 기여를 한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몇가지 더듬어 이야기하자면 우선 法務部나 外務部 등의 자문에 응해 자그마한 지식이 나마 보탬이 될 수 있었던 것이 기억에 납니다. 그리고 20여년 동안 지도해 온 法科大學의 模擬裁判에 대한 기억이 소중한게 남아 있습니다. 한국에서 模擬國際裁判을 시도한다는 것은 모험같은 일이기도 했는데 학생들이 훌륭한 성과를 내주어 놀라와 하면서도 흐뭇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도, 미국보다도 앞서서 모의재판을 해왔는데 미국 국제법학회가 주관하며 매년 개최하는 Jessup Moot Court에 많은 나라의 법학도들이 참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 학생들이 출전을 못하고 있는 점입니다. 앞으로 반드시 참여하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國際法學會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것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나름대로 학회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자부합니다. 국제법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國家主義思想이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는 현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제법에서 개인의 人權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人權의 문제가 바로 평화

의 기초라고 믿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기울여 갈 것입니다. 특히 해외동포의 인권문제에는 민족주의적인 시각에서, 한 민족으로서의 애정과 人間主義에서 기울여 온 관심을 지속시켜 나갈 것입니다.

현대의 法學者는 자기의 法思想 혹은 法知識을 우리사회의 현실의 개선을 위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적인 學術誌에의 발표나 강의실에서의 강의도 중요한 것이기는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국가가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에 기여한다거나 우리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과제의 해결에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저널리즘에 빠지는 것은 배격해야 할 것입니다만, 정확한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國家發展에 기여할 수 있다면 그러한 활동도 소홀히 해서는 안되리라 보고 싶습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유기적인 產學協同體系가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봅니다.

**白教授** : 오늘 장시간 동안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서 서울大學校 法科大學을 중심으로 한 大學教育과 研究活動의 과거를 회고해 보고, 또 장래의 과제를 음미해 보는 뜻 있는 시간을 가질수 있었습니다. 法學誌에 귀한 지면을 할애해 주신 法學研究所에 감사드리면서 그리고 선생님의 回甲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靑教授** : 감사합니다.